

감염병 발생 통보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통보자: [] 질병관리청장, []() 의료기관의 장

수신자: [] 소방청장, []() 시·도 소방본부장

[환자의 인적사항]

성명	[] 신원미상	생년월일	yyyy.mm.dd
국적	[] 내국인 [] 외국인(국가명:)	성별	[] 남 [] 여
내원일시	yyyy.mm.dd hh:mm	연락처	
주소	[] 거주지 불명		

[감염병명]

제1급	[] 에볼라바이러스병 [] 마버그열 [] 라싸열 [] 크리미안콩고출혈열
	[] 남아메리카출혈열 [] 리프트밸리열 [] 두창 [] 페스트
	[] 탄저 [] 보툴리눔독소증 [] 야토병
	[] 신종감염병증후군(증상 및 징후:)
제2급	[]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[]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
	[]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[] 신종인플루엔자 [] 디프테리아
	[]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(종류:)
제2급	[] 결핵(結核) [] 홍역(紅疫) [] 수막구균 감염증
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:	

[감염병 발생정보]

발병일	년	월	일	진단일	년	월	일	통보일	년	월	일
확진검사결과	[] 양성	[] 음성	[] 검사 진행중	[] 검사 미 실시							
환자 등 분류	[] 환자	[] 의사환자	[] 병원체보유자								
추정 감염지역	[] 국내	[] 국외(국가명:)	/ 입국일:	년	월	일					
비고(특이사항)	[] 검사 거부자										

[통보의료기관 등]

요양기관번호	요양기관명
주소	전화번호

작성방법

[통보자] 해당되는 통보자에 √표하고, 통보자가 의료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의료기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.

[수신자] 해당되는 수신자에 √표하고, 수신자가 시·도 소방본부장인 경우, 빈칸에 본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.

[환자의 인적사항]

- (1) 성명: 환자의 성명을 적습니다(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).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 미상란에 √표를 합니다.
- (2) 생년월일: 0000년 00월 00일을 적습니다.
- (3) 국적: 내국인과 외국인 중 해당란에 √표를 합니다.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함께 적습니다.
- (4) 성별: 남 또는 여 중 해당하는 란에 √표를 합니다.
- (5) 내원일시: 의료기관에 최초로 내원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(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).
- (6) 연락처: 추후 감염병 대응 절차를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. 이 경우 미성년자,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.
- (7) 주소: 통보 당시의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를 적습니다. 다만, 신원미상이거나 주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란에 √표를 합니다.

[감염병명]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√표를 합니다.

- (1) 제1급감염병 중 ‘신종감염병중후군’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.
- (2) ‘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’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며,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감염병명을 적습니다.

[감염병 발생정보]

- (1) 발병일: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(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“0000-00-00”을 적습니다).
- (2) 진단일: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.
- (3) 통보일: 질병관리청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 또는 시·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 날짜를 적습니다.
- (4) 확진검사결과: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「감염병의 진단기준」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- (5) 추정 감염지역: 감염된 곳이 국외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명과 입국일을 함께 적습니다. 이 경우 체류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모두 기재합니다.

[통보의료기관 등] 통보자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를 적습니다.

※ 비고

결핵의 경우에는 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(결핵환자등 신고·보고서)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는 결핵환자 정보 이외의 정보 항목(발병일, 진단일 등)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